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1113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천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은지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11. 29. 접수 제112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2 기재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B 사이의 2019. 11. 29.자 재산권 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거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등기의 추정력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7799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아름

별지